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24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이소영·장철민·전용기

김성환 · 김정호 · 박지혜

김한규 · 신정훈 · 박홍배

박상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이에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바 있음.

그러나, 현재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그 명칭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취지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

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 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42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44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후인지 결산서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기후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기후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기후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기후인지 결산서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4

호의2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4의2. 기후인지 결산서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8조의2(기후인지 결산서의 작
	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
	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기후인
	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
	<u>여야 한다.</u>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는 기
	후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u>한다.</u>
	③ 기후인지 결산서는 집행실
	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
	<u>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인지 결

<u>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u> <u>통령령으로 정한다.</u>